

의안번호	제 101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발의자 : 오영탁,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박병진, 연종석,
이옥규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교통소통대책 수립, 검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마. 교통소통대책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충청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18. 11. 15.~ '18. 11. 20.(의회홈페이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지사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험(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11. 15.>

1. (생 략)

2. 교통소통대책

3. ~ 7. (생 략)

② ~ ⑦ (생 략)

[별표 2] <개정 2014.11.24.>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1. ~ 3. (생 략)

4. 공사방법

가. (생 략)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생 략)

5. ~ 7. (생 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15.7.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8.3.28]

[제목개정 2015.7.24]

[종전 제26조는 제44조로 이동 <2008.3.28>]